



수입
인지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본인은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약정합니다.

제 1조(거래조건)

계약사항	계약번호	상품명	계약자	대출신청금액(원)	이자율			
			만기수익자	대출한도(원)	금리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적용금리

- 대출기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효력상실일)
- 대출한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과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 기준 이내 (추후 변동가능)
- 기준금리 : 예정이율, 표준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등
- 상기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이며, 대출 기간 중 이율 변동 시 변동된 이율이 적용 됩니다.
- 대출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 내 언제든지 상환 가능
- 이자납부시기 : 매월 _____ 일
- 즉시변제 및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 2조부터 제 8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내용에 대해 설명 받았으며,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약정합니다.

계약자 확인(방문 신청 시)

계약자(법인명)	(서명 / 인감날인)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E-mail :

송금받을 계좌번호 기재란(방문 신청 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주민등록번호)	
		예금주(성명)	(서명 / 인감날인)

안내물 수령방법 : ☐ 우편 / ☐ 휴대폰문자서비스 / ☐ E-mail (※ 우편 및 문자서비스는 반드시 선택해야 함)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및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대출 송금완료 알림톡으로 발송해드리며, 원하시는 경우 서면교부, 우편, E-mail로 제공해드립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작성해 주십시오(방문 신청 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수익자(만기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대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기수익자는 보험계약 대출신청에 대해 동의합니다.

만기 수익자 (인 또는 서명)

0000년 00월 00일



제 2조 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과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 3조 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2005.4.1 이후 계약은 효력상 실일까지로 한다) 내로 하되, 본인은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 4조 대출이자납입 및 인지세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즉시출금, 가상계좌,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모바일 앱, ARS)를 이용할 수 있고,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이자 납입응당일(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입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로 한다)
- (3)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 및 기타비용은 차주인 계약자가 50%, 회사가 50% 균등 부담한다.

제 5조 즉시변제

- (1)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 8. 1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 8. 1부터 2005. 3. 31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4.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 되는 때
- (2) 제 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5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 6조 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한다.

제 7조 주소변경의 통지

-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8조 변액보험계약대출

- (1) 변액보험계약대출은 유지중에만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효력상실일까지로 한다.
- (2) 변액보험계약대출은 지급일 기준 계약 별 월 1회, 연 12회 가능하다.
- (3) 변액보험계약대출 기준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 지급 : 접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가 적용되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
 - 상환(이자납입):
 - 계약일자 2004.9.17 ~ 2005.5.31 : 상환일(D) 기준가
 - 계약일자 2005.6.1 ~ 2009.3.31, 특정상품이면서 계약일자 2009.4.1 ~ 2010.3.31 : 상환일 + 1일(D+1) 기준가
 - 2009.4.1 ~ 현재 : 상환일 + 제2영업일(D+2) 기준가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1.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1번~4번」항목과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우편접수 시 계약자 및 수익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바랍니다.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의 금액은 신청하는 총 대출금액으로 기재)
- 작성하신 후 보험계약대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일체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해당 은행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에 인감 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인감날인(도장 찍음)하셔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 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본인 작성 및 발급기준)

- ① 보험계약대출 청구서(인감날인)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3개월이내) ③ 통장사본(자동이체 계좌로 수령 시 생략)
- ④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⑤ 신분증 사본(앞면만) ⑥ 만기수익자 지정되어 있을 시, 수익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3개월이내) ⑦ 보험계약대출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3.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라이나타워) 라이나생명 계약관리팀 앞

4. 문의사항 안내

전화 1588-0058 (고객서비스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www.lina.co.kr)



사이버창구 **www.lina.co.kr**

- 통합조회 ■ 정보변경 ■ 각종 신청서 양식 ■ 보험계약대출
- 사고보험금 ■ 증명서 발행 ■ 입출금 (배당금, 휴면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모바일 홈페이지 (<http://m.lina.co.kr>)에서도 계약조회, 보장내역, 보험료납입내역
해지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88-0058**

- 사고보험금 상담 ■ 방카슈랑스 및 변액 유니버설 상담
- 보험계약 취소 ■ 증권, 각종 증명서 발급
- 각종 보험관련 상담 ■ 상담원 연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예의거,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한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되며(변액특별계정 대출은 D+2일 지급), 보험기간 동안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미납이자에 대한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 금리로 사용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의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Q2 대출이용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 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또한,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상이하오니, 해당 조항(6. 즉시변제)의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연락처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ina.co.kr>) 또는 고객센터(1588-0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의 개요 및 유의사항

상품명	
보험계약대출금	
대출이율	
금리적용방식	
대출기간	대출실행일부터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가능)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 인지세

대출금액과 이자 외에 대출약정 체결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입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비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의 신용상태(개인신용평점, 재산상황 등)와 무관하게 고객님의 보유한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부리이율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가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므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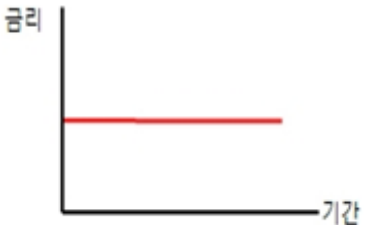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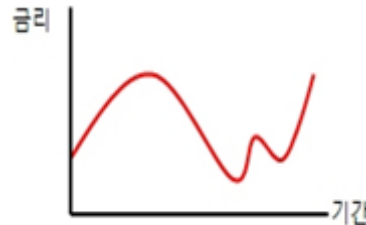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자율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에 따라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금리확정형(고정금리)	금리연동형(변동금리)
운용형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가입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시
내 용	보험계약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변동주기(통상 1년)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대출금리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예정이율) + 가산금리(15%~20%)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공시이율) + 가산금리(15%~20%)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대출금리는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과 가산금리로 산정됩니다.

보험계약 대출금리	=	해약환급금 부리이율	+	가산금리
		- 금리확정형(고정): 예정이율 - 금리연동형(변동): 공시이율		원가요소 (인건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등) 유동성프리미엄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 등) 목표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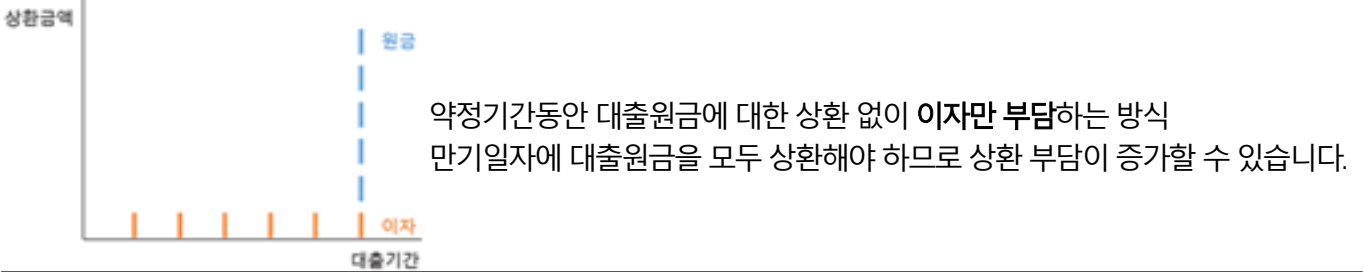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은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리확정형(고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변동)은 공시이율을 의미합니다.

- 예정이율: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키로 미리 약정한 이율(고정)
 - 공시이율: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
- 가산금리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요소: 업무원가(인건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등),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유동성프리미엄: 보험계약대출을 위한 예비유동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등
 - 목표이익률: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



5. 대출 상환방법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천만원을 5%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만기 일시상환	<u>11,000,000원</u>	1회 ~ 23회 : 41,666원 (이자만 납부) 24회 : 10,041,666원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부일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합니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이자 가산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계산됩니다.

6. 즉시변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 8. 1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 8. 1부터 2005. 3. 31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4.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상기 ②~③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

7.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까지이며,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계약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8.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권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계약체결 관련 중요사항 안내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의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어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필수] 보험계약대출의 체결 · 이행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계약 대출 체결 · 이행'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체결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는 보험계약대출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동의서입니다.

본 동의 후 **동일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 대출의 이용 · 유지 · 관리 · 범위 내**에서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제3자 제공을 위하여 **귀하에게 별도의 추가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보험계약대출의 체결 · 유지 · 관리 - 금융거래 업무(금융거래 신청, 대출금 지급 · 이체, 자동이체 등) -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이행 -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 보험계약대출의 체결유지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상담(당사 및 당사 대출 상담사 및 설계사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본 보험계약대출 관련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의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u>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 · 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국내거소신고번호,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계약대출의 실행 및 상환 등 출납), 보험계약 대출관련 정보(대출실행일, 대출금, 대출금리, 상환일자, 관리번호, 거래설정, 내역 정보 등), 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 · 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 · 이용</u>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 국가기관 등 :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 보험계약대출의 현황 확인, 대출거래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 정보회사의 업무 - 국가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위탁사업자 포함)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 입 · 출금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을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계약 가입 판단 지원, 보험계약 공동인수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외국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 · 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국내거소신고번호,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
↳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계약대출의 실행 및 상환 등 출수납), 보험계약 대출관련 정 보(대출실행일, 대출금리, 상환일자, 관리번호, 거래설정, 내역 정보 등), 당사 및 신용정보집 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 · 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위 <u>개인신용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lina.co.kr]에서 확인 가능)

년 월 일			
수령인(예금주)	(서명)	납입자(예금주)	(서명)
법정대리인1	(서명)	법정대리인2	(서명)
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법정대리인 1인과 합의 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계자 중 1가지를 택하여 서명 가능 합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 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거래확인서(개인/개인사업자)

청구권자 필수작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에 의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거래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이거나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하신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수기록사항)

■ 필수기재사항 (아래 항목들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성명	한글명	(내국인 필수)	실명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영문명	(외국인 필수)	실명번호구분		
외국인	국적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외국인 필수)			
	성별	☐ 남 ☐ 여			
주소	□□□□□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
				e-mail	@
직업					
직장/사업 정보 ¹	직장명(사업자명)		직종/업종 ²		
	부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직위		개업년월일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사업정보

2 직종/업종: 전문직(정치인, 공무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사업자(부동산서비스,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귀금속판매상, 주류판매상, 기타자영업), 회사원, 교사,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주부, 학생, 무직 등

(친권자/대리인만 작성) 본인과의 관계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 친인척 ☐ 직장상사/동료/친구 ☐ 기타 ()
--------------------------	---

■ 추가기재사항 (요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거래목적	☐ 가족보장 ☐ 노후준비 ☐ 상속준비 ☐ 자녀양육 ☐ 저축 ☐ 부채면제 ☐ 기타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근로 및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상속/증여 ☐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 기타 ()

확인란	법정대리인(친권자) 서명란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청구권자 (서명)	친권자1 (서명)	본인은 다른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대리인 (서명)	친권자2 (서명)	

신원확인정보

주민등록증 발급일

년 월 일

(운전면허증 제출하시는 고객은 기재 불필요)



고객거래확인서 (법인/단체)

청구권자(법인) 필수작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거래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이거나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하신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수기록사항)

■ 필수기재사항(아래 항목들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 법인정보

법인(단체)명	한글명		실명번호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영문명	(영문으로 작성)		
본점(주요사업장) 소재국가			본사	주소
실명번호				
업종	(영리법인)		연락처	전화
설립목적	(비영리법인)			
상장여부 ¹	☐ 거래소 상장 ☐ 코스닥 상장 ☐ 해당없음		종업원수	약 ()명
법인구분 ²	☐ 일반법인(대기업) ☐ 일반법인(중소기업) ☐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 ☐ 비영리단체 ☐ 기타			
비영리단체구분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 정부/지자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인허가/신고수리된 비영리단체 ☐ UN산하의 국제자산단체(예, 유니세프 등) ☐ 중앙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종교단체 ☐ 각종 동호회 ☐ 노조 또는 사내복지기금 ☐ 학회 또는 연합회(예: 물리학회, 골프협회 등) ☐ 기타()			

1 대기업: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30대 주채무 계열" 중 상장기업

2 비영리법인/단체: 법적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

■ 대표자정보

성명	한글명		주소	□□□□□	
	영문명				
외국인	국적		연락처	전화	) -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성별	☐ 남 ☐ 여		e-mail	@



■ 실제 소유자 확인

■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택(✓)	비고
1) 귀 법인/단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입니까?	☐	1) 실소유자 확인 제외
2) 귀 법인/단체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 중 최대 지분 소유자	☐	2~4) 실소유자 확인 대상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① 대표자, 임원,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② 최대지분 소유자 1인	☐	
③ ①, ②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4) 3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법인/단체 실소유자 · 2~4) 항을 선택한 경우 작성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 작성인(법인 대표 또는 임직원 중 확인서를 작성하는 자) 정보

직급	성명	(서명)

■ 법인계약 실제 소유자 확인 작성 요령

1) 2, 3, 4 중 1개 항목은 필수, 중복선택 불가

■ "1)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

- 2, 3, 4는 선택불가, "작성인 정보"에 해당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2) 25% 이상 지분 소유자 중 최대 지분 소유자 1인"에 해당

-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 "작성인 정보"에 해당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또는 ② 또는 ③ 중 1개 항목 필수, 중복 불가
-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 "작성인 정보"에 해당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4) 3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

-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 "작성인 정보"에 해당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추가 기재 사항

거래정보	
거래목적	☐ 보장성 ☐ 상속/증여 ☐ 사업상 거래 ☐ 저축 및 투자 ☐ 기타()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기타()

동의자 서명란			
법인명	(법인 인감)	대표자1	(서명)
		대표자2	(서명)



자동이체 납입신청서(□신규 · □변경 · □해지)

계약자명		계약번호		1회보험료	
납부대상			희망이체일		
보험료 / 보험계약대출이자 / 직납			10일/ 15일/ 25일/ 말일		
예금주		주민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납부자()은 상기 보험계약()의 보험료/대출이자 납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보험료 자동납부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수집이용 목적: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신청
- 이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납부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료(대출이자)
 - 제공 목적: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신청
 - 제공받는 자: 계좌개설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최대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 3자 제공

납부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조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납부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자동납부 이용안내

자동납부는 「계약자=예금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계약자≠예금주」인 경우, 예금주는 계약자·계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금주가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 변액유니버설상품의 보험료는 자동납부 할 금액을 기재 바랍니다.
- 자동이체 납입기일 현재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납입기일 이후 납입최고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체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구비서류
계약자 = 예금주	신청서(통장인감날인)/통장사본/예금주 신분증 사본
계약자 ≠ 예금주	신청서(통장인감날인)/통장사본/관계확인서류

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은행자동납부) 약관

1.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보험료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7. 보험료 자동이체 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 처리됩니다.

접수일	접수유형	방문, 우편	접수자	(서명/인)
-----	------	--------	-----	--------